

우리 아이 교육비
고민 해결



2018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집중 신청기간

2018년 3월 2일 (금) ~ 3월 23일 (금)

※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기타 저소득층

지원 내용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교 학비,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등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만 신청 시 온라인신청 가능

(학부모 공인인증서 필수)

- 교육비 원클릭 (www.oneclick.moe.go.kr)
- 복지로 (www.online.bokjiro.go.kr)



교육급여와, 교육비 무엇이 다른가요?

★ 지원 기준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이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항목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 중위소득 52%~60%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보다 더 엄격하게 선정합니다.

따라서 교육급여 계산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교육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교육비 계산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여서 교육비는
지원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준

★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 **교육비** : 저소득층 자격 보유(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구 분	내 용
① 차상위 자활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자
②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부담을 경감 받는 자
③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아동) 수당을 받는 자
④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장애인 연금법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는 자
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지자체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별 지원 기준”에 해당
- 학교장 추천 : 가정형편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별도 선정



지원기준

★ 교육비 항목별 지원 기준 (서울시교육청)

자격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인터넷통신비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전체	전체	전체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
	법정차상위 대상자	○	○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 추천			○		

※ 지원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사업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신청절차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

교육급여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66,000원	50,000원	-	-
중학생	105,000원	57,000원	-	-
고등학생	105,000원	57,000원	해당 학년 교과목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원 횟수	연 1회	연 2회 나눠서 지급	연 1회	입학금 : 신입생 수업료 : 분기별
지원 방식	수급자 계좌로 지급		학교로 지급	학교 납부액 감면

교육비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인터넷통신비
초등학생	-	학기 중 중식비 전액 (무상급식 학교 제외)	연 60만원 이내	가구별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이내
중학생	-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방식	학교 납부액 감면			통신사

*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 받는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합니다.

※ 학년 별로 지원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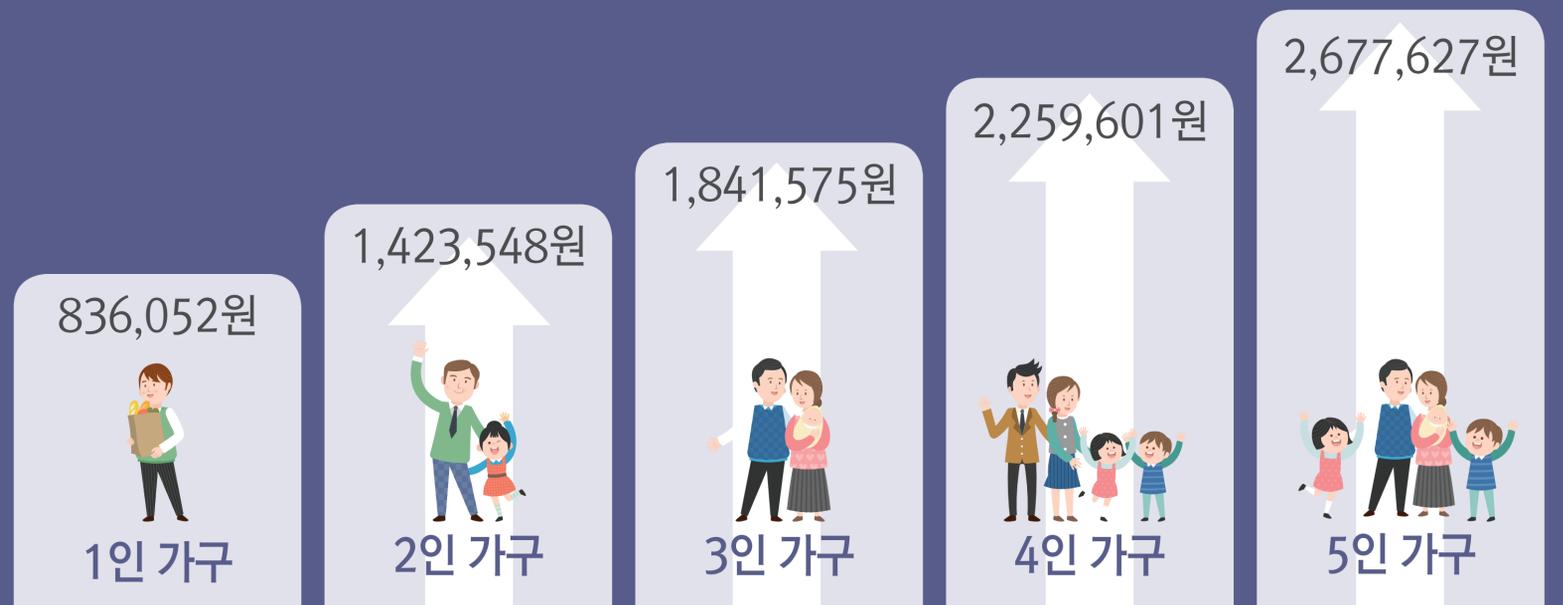


참고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 순위로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18년 4인 가구 기준 451만원입니다. 따라서 중위소득 50%는 4인 가구 기준 225만원입니다.

2018년 중위소득표
50%적용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원(학생 본인, 부모, 형제, 자매 등)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값

$$\text{소득인정액} = \text{소득평가액} + \text{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가구의 근로, 사업, 재산, 연금 소득 등을 월 기준으로 환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각종재산* - 기본공제액 - 부채) × 월 소득환산율
- * 각종재산 : 토지, 주택, 전월세보증금,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 등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복지로(www.bokjiro.go.kr)

- ▶ 복지서비스정보 ▶ 나를위한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모의계산
-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moe.go.kr)

- ▶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단 모의결과는 참고치이며, 실제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 학교, 교육청,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Q&A
- * 보건복지 콜센터 129

